

검 토 의 건 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3668)

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68번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은 ‘26.2.27. 개정·시행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시행령 규정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된 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각 분야별 위원 최소인원 기준 개정, 위원회에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인원 기준 신설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, 본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